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03 발의연월일: 2020. 10. 22.

발 의 자:홍익표·한준호·김원이

민형배 · 송영길 · 임종성

고용진 · 임호선 · 이용선

홍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국세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통관을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를 체납한 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통관보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압류 등 체납처분이 곤란하여 체납징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도 통관단계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해당 체납자의 물품을 통관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37조제5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42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 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 임. 법률 제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7조제5호 중"「국세징수법」 제30조의2"를"「국세징수법」 제30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관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제237조(통관의 보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	
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	<u> 의2</u>
는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